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5-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제적 진실규명과 인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업무,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업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대한 조사업무, 그 밖에 진실·진상규명 등을 통해 형사처벌 혹은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lagirima@korea.kr

- 팩스 : (02)6320-0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02)6320-0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